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15
----------	-----

2016년 2월 2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년 11월 26일, 송재형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2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6년 2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송재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고, 근거 법령인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의함.(안 제2조제14호)
-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.(안 제1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조제1호, 제2호
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붙임

2) 비용추계 비대상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선희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이하 “신재생에너지법”이라 함)」에 따른 용어 정의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“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”의 제출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.
- 다만,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, 개정조례안에서는 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”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있어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이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관 계 법 령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신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수소에너지

나. 연료전지

다. 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라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2. "재생에너지"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태양에너지

나. 풍력

다. 수력

라. 해양에너지

마. 지열에너지

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사.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아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

제28조(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,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

2.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

3.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

4.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

5.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“신·재생에너지”를 “신에너지”와 “재생에너지”로 구분하여 정의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1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2월 2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라 “신·재생에너지”를 “신에너지”와 “재생에너지”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“신·재생에너지”를 “신에너지”와 “재생에너지”로 구분하여 정의함. (안 제2조 제14호~제15호)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신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
15. “재생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13. (생략)</p> <p>14. "신·재생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"신·재생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14. "신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</u></p> <p><u>15. "재생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</u></p>
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u>다음</u>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<u>12월 말까지</u>,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u>해당</u>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<u>1월 31일까지</u>,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신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
15. “재생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다음”을 “해당”으로, “12월 말까지”를 “1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13. (생략)</p> <p>14. "신·재생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"신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</p> <p>15. "재생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</p>
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,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,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